

『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11월 1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1월 26일

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행정안전국장 유 익 수

나. 제안이유

-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금액을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별표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규정 정비(안 별표 1)
- 법령 제명 및 조문 변경사항 보완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
-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수수료 징수 관련부서 및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현 명 숙

○ 본 『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
-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신청 및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수수료를 삭제하고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정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징수기준을 통해 민원 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